

수번호: 2698
 접수일시: 2016. 8. 18. 16:35
 기한: 2016. 8. 19. 10:35

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제출인	상호(대표자) : 남강환경개발	사업자등록번호(노동부등록번호) 제 3145 호		
	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로 229번길 1(판문동,3층 3호) (전화번호: 055-753-0133)			
건축물	건물명 진교초등학교	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41		
	연면적(m ²) 9061.40	작업기간 2016. 08. 08		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m ²)·부피(m ³)] 5696.99m ³ (필요 시 별지 첨부)			
측정기관	대표자 황정환	사업자등록번호 127-86-24859		
	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(신일동,904호)			
측정 일시	2016년 08월 08일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 석면
	첨부		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첨부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6 년 08 월 08일

제출인 남강환경개발



경상남도 하동군청

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 공기중 석면농도측정



조 사 명:	진교초등학교교실천장석면 해체 공사 비산농도 측정
주 소:	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41 진교초등학교
측정일시:	2016년 08월 08일
의 퇴 자:	남강환경개발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위치 및 결과

측정 결과				
측정 일시	2016년 08월 08일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 석면
	#1	폐기물보관소 1	0.0035471	검출 미만
	#2	폐기물보관소 2	0.0011392	검출 미만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

		측정 위치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음

(주)이에스 연구소

우 500-7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4-39 테크노시티 9층 904호
전화: 042-935-0748 / FAX: 042-934-1748 / E-mail : www.esins.co.kr@gmail.com

의뢰기관	: 남강환경개발	시료 받은 일시	: 2016. 08. 08
Tel	: 042-935-0748	분석일	: 2016. 08. 08
Fax	: 042-934-1748	보고서 작성일	: 2016. 08. 08
제 목	: 진교초등학교교실천장석면 해체 공사 비산농도 측정		

위상차 현미경법을 이용한 정량 분석 결과입니다.

시료번호		채취위치	총 유량			측정결과	검출석면
Sample No.		Location	Liter	Min	L/min	f/cc	0.01 f/cc
1	#1	폐기물보관소 1	414.8	34	12.2	0.0035471	기준 미만
2	#2	폐기물보관소 2	430.5	35	12.3	0.0011392	기준 미만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
분석자

황정환



* 이 분석결과는 건축자재의 성분 증명 및 법적인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.

* 본 시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결과 발송 후 30일 후에 폐기처분 됩니다.

위상차 현미경(PCM)은 석면 함유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므로 석면 함유 여부 판단이 필요한 시료의 경우 투과전자현미경(TEM)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또한 위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보고서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, 무단 복사를 수정을 금합니다.

【석면조사기관지정서】

제2014-120004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(주)이에스연구소	
소재지	(306-230)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(신일동, 테크노시티) 904호()	
대표자성명	황정환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4. 8. 19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

